

4과목 자본시장법, 금융위규정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 ①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을 지도, 감독
- ② 금융정책, 제도
- ③ 금융기관 감독, 검사, 제재, 설립시 인허가
- ④ 자본시장 관리, 감독

증권선물위원회

- 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 ②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 ③ 금융위원회 소관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 ④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금융감독원

금융위, 증선위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를 수행

관계기관

- 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 ② 한국금융투자협회
- ③ 한국예탁결제원
- ④ 증권금융회사

비조치의견서 등

1. 비조치의견서

- 1)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 2) 금감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3) 그러나 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부합하지 않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행정지도

- 1)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불이행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함
- 2) 문서가 원칙이나 구두로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음
- 3)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함

3. 실무해석, 의견 : 질의에 대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실무부서가 제시함. 비공식적

4. 모범규준

- 1) 금융위, 금감원,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기준으로
- 2)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유설명의무가 있으며 제재부과 가능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 ① 열거주의 → 포괄주의
- ② 기관별 규제 → 기능별 규제
- ③ 6개 금융투자업 상호 간의 겸영 허용(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전제)
- ④ 사전에 법률에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⑤ 투자자보호제도의 강화

금융투자상품

- 1) 정의
 - ① 투자원본 산정시 제외되는 것 : 판매수수료 등 용역의 대가로서 투자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아닌 부분
 - ② 회수금액 산정시 포함되는 것 : 투자자의 중도해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환매수수료, 중도해지 수수료, 각종 세금, 발행인이나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미지급액 등
- 2) 금융투자상품 제외 대상 3가지
원화CD, 관리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증권

- ① 채무증권 : 채권, 기업어음, 이자연계과생결합채권은 사채권의 범위에 포함
- ② 지분증권 : 주식, 신주인수권
- ③ 수익증권 : 신탁, 투자신탁
- ④ 투자계약증권
- ⑤ 과생결합증권 : ELS등
- ⑥ 증권예탁증권(DR) : 외국 상장 시

금융투자업

- ① 투자매매업 : 자기계산
- ② 투자중개업 : 타인계산
- ③ 집합투자업 : 펀드운용
- ④ 투자자문업 : 유사자문업은 해당하지 않음
- ⑤ 투자일임업 : 투자자별로 구분
- ⑥ 신탁업

금융투자업의 인허가 및 등록

- ①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② 인가제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③ 등록제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요건의 유지

1) 유지요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인가요건을 유지

2) 유지요건의 완화

- ① 최저자기자본 요건 :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 ② 대주주 요건 중 일부 요건 완화

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 이외의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투자자의 구분

- ① 일반투자자로 전환될 수 없는 전문투자자
- ② 일반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한 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전문투자자로 인정)

㉠ 주권상장법인

-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
- ㉣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 지방자치단체

③ 일반투자자에서 전환된 전문투자자(요건 + 금융위신고, 2년간)

- ㉦ 법인 또는 단체 :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부감사 대상법인은 50억원) 이상
- ㉧ 개인 : 정해진 요건에 해당 시 (투자경험 + 소득, 자산, 전문성 중 1가지)
- ㉨ 이에 준하는 외국인

※ 위험회피목적 이외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전문투자자가 되어야 가능

순자본비율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의 기본원칙

영업용순자본 = 순재산액 - 차감항목의 합계금액 + 가산항목의 합계금액

- ① 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
- ②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모두 산정
- ③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차감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음.
- ④ 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과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 사이에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의 위험액을 감액할 수 있음.
- ⑤ 부외자산과 부외부채에 대해서도 위험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의 요건

(1) 경영개선권고

- ①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 ②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 ③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① 또는 ②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 ① 순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②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 ③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경영개선명령

- ①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경우
- ②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을 금지하는 업무

- ㉠ 준법감시인의 업무(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업무는 제외)
- ㉡ 내부감사업무
- ㉢ 위험관리업무
- ㉣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또한 다음의 핵심업무도 위탁이 금지됨.

- ㉠ 투자매매업 : 계약 체결, 해지(단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 제외), 매매호가 제시, 인수
 - ㉡ 투자중개업 : 계약 체결, 해지(단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 제외),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
 - ㉢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 원칙적으로 모든 본질적 업무가 핵심업무에 해당

정보교류의 차단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 포함)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와 계열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②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외)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 ③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④ 정보차단벽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 통신을 하는 경우 기록 유지 및 준법감시인의 확인 요
- ⑤ 부서 및 업무의 독립
- ⑥ 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범위
 - 계열회사
 - 외국 금융투자업자 본점(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 집합투자증권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투자광고

- 1) 투자광고의 필수 포함 사항(법령상)
 - ①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②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 ③ 투자에 따른 위험
 - ④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 ⑤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 ⑥ 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외에도 규정상 다음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 ①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 ②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 등의 시기 및 내용
- ③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 ④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 ⑤ 관련법령, 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1) 매매형태의 명시 : 투자매매업인지, 투자중개업인지
- (2) 자기계약의 금지
- (3) 시장매매의무
- (4) 임의매매의 금지
- (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①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②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 ③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④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0일)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⑤ 일임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투자일임업형태로 하는 경우 등은 예외

손실보전, 이익보장행위의 금지

다만,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 다음의 행위는 예외로 한다.

- ①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 ③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해배상하는 행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1) 개요

내부자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포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

2) 내부자 : 법인, 주요주주, 임직원, 인허가나 계약관련, 정보수령자

3) 정보의 미공개

당해회사가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 후 일정한 주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만 공개된 정보로 규정함.

4) 미공개 공개매수정보 이용행위 금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①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여부와 무관
- ② 주권상장법인의 특정증권 단기(6개월 이내)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
- ③ 대상자는 주요주주와 임원, 그리고 재무, 기획, 연구개발 직원
- ④ 특정증권의 범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금지 대상증권과 같음

부정거래행위의 금지

1) 정의

「자본시장법」은 유형화된 시세조종행위금지 및 내부자거래금지로 규제할 수 없는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

2) 부정거래의 유형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① 부정한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
- ③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과징금 부과가능)

1) 정보이용 교란행위

2차 이상의 다차 정보수령자와 미공개정보이용, 외부(시장, 정책)정보이용,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이용 규제

2) 시세관여 교란행위

매매유인이나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더라도

- ① 허수성 주문 대량 제출
- ② 가장, 통정매매
- ③ 풍문유포

등을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1. 조사대상

- ① 금융위, 금감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 ② 한국거래소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 ③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 ④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조사결과조치

- ① 형사벌칙대상행위 :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 ② 시정명령
- ③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등
- ④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인가등록취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1. 금융상품 분류 : ① 예금성상품 ② 투자성상품 ③ 보장성상품 ④ 대출성상품

2. 금융상품 판매업자 분류

- ① 직접판매업자 : 은행, 보험사 등
- ② 판매대리.중개업자 :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
- ③ 자문업자 : 투자자문업자

3. 6대 판매원칙 확대적용

- ① 적합성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 금지
- ② 적정성원칙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이를 고지, 확인 (예금성상품에는 미적용)
- ③ 설명의무 :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의무
-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 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금지
- ⑥ 허위, 과장광고 금지 : 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판매원칙 위반 시 제재강화

- ①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내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가능
- ② 판매제한명령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제한, 금지
- ③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 의무 위반여부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 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 등으로 전환
- ④ 징벌적 과징금 :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 ⑤ 과태료 : 판매원칙 위반 시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 도입

① 청약철회권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

② 소송중지제도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중지할 수 있음

③ 조정이탈금지제도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

④ 자료요구권

소비자가 분쟁조정, 소송 등의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 자료의 열람 요구 시 수용할 의무

4과목 협회규정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금지

① 선행매매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② 스캘핑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투자분석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미리 당해 증권 등을 매수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표한 후 가격이 오르면 당해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거래

③ 금융투자분석사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함.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상품

- ①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 ②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③ 다음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 자신이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 ㉡ 자신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투자광고의 심의

1)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2) 협회의 심사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결과통보서 서식에 따라 신고서 접수일 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에 통보

3) 심사필의 표시

투자광고물에는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은 사실 및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함.

핵심설명서 설명의무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투자설명서도 교부)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①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금 적립 계좌 등은 제외)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단, 이 경우는 간이투자설명서로 대체 가능
- ② 일반투자자가 신용융자거래, 유사 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③ 일반투자자나 개인전문투자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계약하는 경우

계좌의 통합, 폐쇄 등

(1) 계좌의 통합

금융투자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투자자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계좌는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 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음.

(2) 계좌의 폐쇄

-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쇄할 수 있음.
- ㉠ 투자자가 계좌의 폐쇄를 요청하는 경우
- ㉡ 계좌의 잔액·잔량이 '0'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② 금융투자회사는 계좌가 폐쇄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

(3)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

- ① 위탁자예수금
- ②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 ③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중 현금위탁증거금은 제외

투자광고 시 금지행위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①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 계약 또는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 ②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③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 ④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 ⑤ 투자자들이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⑥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

- 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 ②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료
- ③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의 경품류 또는 식사
- ④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
- ⑤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ELW, ETN, ETF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 특례

- 1) 별도거래신청서 작성 : 최초로 ELW, ETN 매매 시
- 2) 협회인정 사전교육이수 : 최초로 ELW, 레버리지 ETN, 레버리지 ETF 매매 시
(제외)법인, 단체,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비지정형 금전신탁계약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운용에 관한 규정

- 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 ①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다.
 - ② 금융투자회사는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그러나 모든 약관을 다 수정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예외가 있다)
- 2) 개별약관

금융투자회사가 약관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정, 변경 후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법상 사전신고대상인 경우는 시행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과목 거래소규정

시장 및 금융투자상품 범위에 따른 회원구분

- ① 증권회원
- ② 지분증권전문회원
- ③ 채무증권전문회원
- ④ 파생상품회원
- ⑤ 주권기초 파생상품 전문회원
- ⑥ 통화,금리기초 파생상품 전문회원

결제이행책임 부담 여부에 따른 회원구분

- ① 결제회원 : 결제, 매매 가능
- ② 매매전문회원 : 매매가능, 결제는 결제회원에게 위탁해야 함

상 장 파 생 상 품

주식상품거래 (1)

구분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25만	5만	25만	5만
결제일	분기일	매월		
최종거래일	결제일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코스피 200 위클리옵션도 있음

주식상품거래 (2)

구분	코스닥 150선물	ETF 선물	섹터지수 선물	KRX300 선물	해외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
결제일	분기일				
최종거래일	결제일의 두 번째 목요일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 섹터지수 : 주식시장 상장주권을 대상으로 산업군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지수

주식상품거래 (3)

구분	코스닥 150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
결제월	매월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단, 해외지수선물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 아닌 다른 날이며 어느 날인지 기억할 필요는 없다.

금리상품거래

구분	3년 국채선물	5년 국채선물	10년 국채선물
거래대상	액면 100원, 표면금리 5%, 6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 표준물		
결제월	분기월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통화상품거래

구분	미국달러선물	엔선물	유로선물	위안선물	미국달러옵션
결제월	매월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거래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최종결제방법	인수도결제				현금결제

일반상품거래

구분	금선물	돈육선물
거래대상	금지금(골드바)	돈육대표가격
결제월	매월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선물스프레드거래

1) 종목 간 스프레드 거래

- ① 선물 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은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에 있어서 세척이 정하는 2개의 결제월 종목 간 선물 스프레드별로 구분
- ② 선물 스프레드거래에 있어서 가격은 원월 종목의 가격에서 근월 종목의 가격을 뺀 가격. 다만,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근월 종목의 가격에서 원월 종목의 가격을 뺀 가격
- ③ 선물 스프레드거래에 있어서 매도는 근월 종목의 매수 및 원월 종목의 매도를 하는 거래로 함. 다만,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근월 종목의 매도 및 원월 종목의 매수를 하는 거래로 함.
- ④ 선물 스프레드 종목은 상장결제월 종목수보다 1종목 적음.

2)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3년국채선물과 10년국채선물 간의 스프레드로서,
각 최근월종목 간 및 각 차근월종목 간 2개의 종목 상장

주식상품거래의 필요적 중단 및 종결(Circuit Breakers)

- ①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8% (또는 15%)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어 주식시장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20분간 중단한다
- ②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어 주식시장의 모든 거래가 종결되는 경우 당일 정규거래를 종결한다
- ③ 주식시장의 필요적 거래중단은 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으나 필요적 거래종결은 14시 50분 이후에도 중단된다
- ④ 필요적 거래중단 후 10분간 단일가 호가접수시간을 거쳐 거래를 재개한다